

## ●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-71호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04일
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### 항만운송(관련)사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처분의 제목: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
2. 처분의 법적 근거: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3. 처분의 당사자 및 처분내용

구분	업체명	주소	업종	처분원인	처분내용
1	(주)화인기업 (대표 황*욱)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22(신촌동, 에스티엑스중공업내)	항만용역업	사업수행실적 없음 (1차 위반)	사업정지 3개월 (2026. 4. 16. ~ 2026. 7. 15.)
2	(주)우리선박테크 (대표 김*양)	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7번길 2			
3	kesco 김포환경방역공사 (대표 김*선)	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99, 3층			
4	(주)토탈마린 (대표 천*환)	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161	선박수리업		
5	(유)에스제이 (대표 오*철)	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14			

#### 4. 유의사항

-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(061-280-1663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 
끝.